

韓國의 對外經濟協定에 관한 小考

金 世 源*

〈目 次〉

- I. 貿易協定の 趣旨
- II. 協定の 分類
- III. 特惠關係와 國際貿易秩序
- IV. 特惠關係를 통한 利得
- V. 結 論

韓國은 對外指向의 成長戰略을 採擇한 以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國家와 多樣한 形態의 經濟關係協定을 締結하여 왔다.

本稿에서는 이 중 貿易協定만을 分離하여 그 趣旨 및 分類를 試圖하고자 하며 이와 關聯하여 特惠協定の 推進에 의한 利得을 概觀하고자 한다.

資本 및 技術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經濟協定 및 韓國經濟와 關聯된 效果分析 등은 다음 機會로 미루고자 한다.

I. 貿易協定の 趣旨

다른 國家의 경우도 그러하거나와 韓國이 그 간 締結하여 온 貿易部門의 協定은 關稅 및 非關稅障壁과 같은 인위적인 諸制限要因의 지지, 緩和내지는 蠲削을 통하여 對象國과의 貿易增大를 期하자는 데 그 意義가 있다. 또 資本 및 經濟協力은 물론 二重租稅禁止, 工業所有權保護 및 投資增進 등을 內容으로 하는 갖가지 形態의 經濟協定 역시 貿易을 포함하는 經濟去來의 擴大에 그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重商主義의 擡頭 以來 存續하여 온 貿易政策의 實施 自體는 自由貿易을 저해하는 要素를 內包하고 있으며 또 世界貿易의 完全自由화가 實現되었다면 一定國間 貿易協定을 交涉할 何等의 理由가 없다. 그러나 兩次大戰間 各國은 經濟擴張, 經濟安定, 雇傭擴大 및 國際收支改善과 같은 國內 一定 巨視的 經濟目的을 追求하려는 수단의 하나로 貿易政策을 採擇하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였으며 그 후 財政, 金融政策과 함께 政策手段(instrument)으로 固定化되었다.⁽¹⁾

保護主義가 極에 達하였던 兩次大戰間 特定國家間 貿易協定은 보다 差別待遇에 입각한 相互利得을 實現하는 데 그 重點이 두어졌던 데 反하여 IMF-GATT體制의 登場 以後 貿易의 自由化가 더 強調되고 있다.

이러한 觀點은 EEC의 탄생 以後 특히 後進諸國間 推進되어 온 經濟統合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相對的인 意味만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²⁾ 그러나 政治, 歷史, 文化 등 諸側面에서 特殊한 關係에 있는 一定 隣接國家間에는, 世界貿易의 完全自由化라는 理想에 큰 期待를 걸 수 없을 경우, 相互 단계별 特惠의 擴大를 通하여 市場을 統合하고자 한다는 點에 着眼한다면 自由主義의 側面 또한 無視할 수 없다.

이제까지 韓國의 對外貿易關係協定을 綜合한다면 輸出所得의 安定내지는 增大, 市場의 多邊化 등을 通한 國際收支改善 및 成長의 促進과 같은 目的을 追求하여 왔다. 反面 輸入의 側面에서는 아직까지 後進國의 立場에서 例外를 援用하여 國際收支改善이나 特定產業 保護를 위하여 一方의인 制限政策의 實施에 依存하고 있다.⁽³⁾ 이를 韓國의 地域別 貿易構造와 對比한다면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重要去來對象地域일수록 많은 數의 協定이 締結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그러나 先進諸國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GATT와 같이 最惠國待遇(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를 內容으로 하는 多邊規定의 存在로 因하여 特惠關係(preferential treatment)의 設定이 除外되므로 事實上 協定の 締結을 通한 貿易增大에는 限界가 있다. 물론 最近 論及되고 있거나 美·日을 포함하는 環太平洋 自由貿易地域의 設立이나 또는 一部 資源保有 經濟後進國과의 特惠協定이 締結될 경우 別途의 問題이다.

貿易部門에서 韓國이 締結한 多者協定(multilateral agreement)은 아직까지 GATT의 테두리 내에 限定되고 있다.

(1) 經濟目的의 達成을 위한 政策手段은 한 例로 E.S. Kirschen et al., *La politique économique contemporaine*,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67 (2ème éd.)에 상세히 分類되어 있음.

(2) 아프리카 및 中南美諸國內 갖가지 形態의 經濟統合機構는 一面 保護主義의 性格을 內包하고 있으며 理論的인 側面에서도 다음과 같은 論文은 關稅同盟에 따른 共同域外關稅의 域內市場保護의 役割을 강조하고 있음.

C.A. Cooper and B.F. Massel, "Toward a General Theory of Customs Un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3 (Oct. 1965), pp. 461~76; H.G. Johnson, "An Economic Theory of Protectionism, Tariff Bargaining, and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PE*, 73 (June 1965), pp. 256~283.

(3) 실제로 IMF(第14條) 및 GATT(第11條) 등은 과도기적으로 이러한 例外를 許容하고 있다.

(4) 韓國이 그간 締結하여 온 貿易協定은 外務部, 『大韓民國 條約目錄』, 1979. 6 및 同條約局, 『條約集』(兩各 條約編 및 多者條約編), 1948~1979 參照.

韓國은 67年 GATT 加入과 同時에 同年 締結된 케네디協商(Kennedy Round) 및 81年 締結된 東京協商(Tokyo Round)에 參與하였는데 이 역시 輸出擴大에 기여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78年 EEC와 締結한 鐵鋼製品에 관한 協定에서도 볼 수 있듯이 74年の 섬유류 多者協定(multilateral fibre arrangement, MFA)과 같은 경우, 韓國側의 輸出自律規制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모든 貿易協定이 國際收支改善을 추구한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단지 同協定の 신속적인 운영에 따라 韓國 輸出의 安定的 增加를 期待할 수 있으며 또 輸出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輸出商品의 多樣化를 實現할 수 있는 直·間接 效果를 指摘할 수는 있다.

特定地域에 偏重된 貿易去來構造의 취약성을 改善하려는, 이른바 市場의 多邊化를 目的으로 締結된 協定 역시 一面 輸出增大의 취지를 同時에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對象地域은 大部分 아프리카, 中南美 및 東南亞諸國 등의 後進國에 局限되고 있는데 그 內容이 아직까지 극히 一般의인 協力の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GATT의 無差別原則인 最惠國 및 國民待遇, 또는 經濟協力の 增大 등에 관한 兩側의 意志를 반영하고 있을 뿐, 實質적으로 經濟去來의 擴大에 기여할 수 있는 內容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GATT에 加入하고 있지 않은 國家의 경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으나 同機構의 會員國인 경우 단순히 儀禮的인 外交關係에 不過하다.

資源確保나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에 따르는 플랜트輸出의 擴大 등 國內 中·長期 政策 目標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한 特惠 및 實質的인 經濟協力を 內容으로 하는 協定の 체결을 시도할 必要가 있다.

II. 協定の 分類

內容을 基準으로 할 때 韓國의 對外貿易協定을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1. 一般無差別協定

韓國이 締結한 大部分의 國別 兩者協定(bilateral convention 혹은 bilateral agreement)은 最惠國 및 國民待遇를 內容으로 하는 所謂 無差別原則의 준수를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즉 79年末까지 韓國은 40個國과 貿易協定을 締結하고 있는데 EEC, 노르웨이, 스웨덴 및 美國을 除外한 모든 國家와의 協定이 이 범주에 屬한다.

非GATT會員國과의 去來에 있어서 이러한 類의 協定은 差別待遇의 排除를 意味할 수도

있으나 大部分 對象國이 會員國이라는 點에서 何等의 實質的인 意義가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協定이 締結된 背景에는 政治·外交的인 配慮나 一種의 再確認을 通하여 相互 貿易擴大를 期하자는 意志가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GATT의 一般的인 無差別原則 以外 同協定은 對象國에 따라 多少 相異한 內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綜合·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一部諸國⁽⁵⁾과는 貿易에 더하여 經濟協력이 追加되고 있으며 많은 國家⁽⁶⁾와의 貿易協定에 있어서는 相互 利益에 기여할 수 있는 輸出增進 對象品目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經濟協力の 具體的인 內容이 缺如되어 있음은 물론 相互 輸出關心品目에 있어서 역시 實質的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特惠措置에 대하여 何等의 言及이 없다.

經濟協力の 增大를 위하여는 別途의 政策的 協商 및 決定이 뒤따라야 하며 또 相互 主要 輸出品目이라 하더라도 國際的으로 主輸出國의 位置에 있지 않은 以上 최혜국대우의 制約으로 因하여 特惠의 供與가 不可能하였다고 해석된다.

다음 大部分의 中·南美, 아프리카 및 東南亞諸國과 締結한 貿易協定の 경우 無差別原則에 대한 所謂「포기條項」(waiver clause)이 但書로 삽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國境貿易에 대한 特惠 또는 自由貿易地域 및 關稅同盟 以上 形態의 經濟統合 推進過程에서 由來되는 貿易上の 諸惠澤은 無差別原則의 適用對象에서 除外된다는 內容이다.

이는 協定對象國의 要請이 관철된 것으로 理解되는데 事實 大多數의 後進諸國은 물론 西歐 및 大洋洲의 一部 先進國들 역시 EEC나 英聯邦과 直·間接的으로 特惠關係에 있던가 또는 隣接國家와 經濟統合을 推進하고 있다.

英國의 EC加入과 함께 EEC-EFTA間 自由貿易이 設定됨으로써 77年 7月 以後 西歐內 最小限 工產品貿易에 있어서 完全自由화가 實現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79年 第2次 로메(Lomé)協定の 調印과 함께 EC와 特惠關係에 있는 ACP會員國數는 57個國으로 增加하였다. 그 以外에도 EEC는 地中海沿岸을 비롯한 많은 國家와 貿易特惠를 授受하고 있다.

한편 域內經濟統合의 推進을 보더라도 現在 아프리카의 UDEAC, 南美的 LAIA 및 東南亞의 ASEAN을 비롯하여 大部分의 後進地域內에서 實質的으로는 貿易上の 特惠가 擴大되

(5)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쉬, 카메룬, 하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뉴질랜드 및 수단 등.

(6) 방글라데쉬, 中央아프리카, 臺灣, 인도, 이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수단 및 타일랜드 등.

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協定對象國이 韓國과의 去來에 있어서 無差別原則에 대한 例外를 援用하고자 하는 것은 當然하게 보이며 이는 既存 特惠는 물론 向後 第3國과의 經濟統合 推進過程에서 發生하는 利益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對韓國去來에 있어서 最惠國待遇를 適用하는 경우 이에 相應하는 代價 없이 一方的인 讓許(concession)만을 提供하는 結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特定部門에 관한 協定

貿易協定の 對象은 無差別原則의 適用과 같은 극히 一般的인 內容 以外에도 特定部門에 限 局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크게 두가지 形態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多者協定(multilateral agreement)의 테두리 내에서 締結된 個別協定이며 둘째는 協定對象國이 國內의 特殊한 經濟的 理由로 因하여 部門別로 韓國과 締結한 兩者協定이다.

첫번째 범위에 屬하는 協定은 아직까지 섬유류 多者協定(MFA)의 테두리 내에서 關係先進國과 締結한 경우에 限定되고 있는데 對象國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EEC, 노르웨이, 스웨덴 및 美國이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62年の 綿織物에 관한 長期協定(LTA)이 數次에 걸쳐 延長된 後 74年 섬유류 多者協定으로 擴大·代替되었는데 國韓도 輸出國의 立場으로 이에 加入하였다. 따라서 이 協定이 定하는 規定의 범위 내에서 韓國은 關係先進國과 品目別 輸出國自律規制를 內容으로 하는 個別協定을 締結하였다.

둘째 韓國은 EC와는 鐵鋼製品, 그리고 美國과는 非 고무靴類 및 컬러TV에 관하여 各各 輸出國自律規制를 취지로 하는 協定은 締結하고 있다.⁽⁷⁾

前項에서 설명한 一般無差別協定の 경우와는 反對로 特定部門에 관한 協定은 해당 品目에 있어서 韓國側의 輸出自律規制를 目的으로 한다는 共通의인 特徵을 들 수 있으며 보다 先進諸國側의 保護主義의 傾向을 反映하고 있다.

물론 섬유류 多者協定の 前文에서도 指摘되고 있듯이 無秩序한 國際市場 攪亂要因을 除去하고 輸出入國間 合意를 通하여 世界貿易의 安定的인 擴大를 期한다는 肯定的인 面을 否認할 수 是 없다. 또 資源波動 以後 先進諸國內 경기침체의 延長에 따르는 失業의 擴大나 國際收支의 만성적인 不均衡도 無視할 수는 없다.

(7) 對外貿易政策의 遂行에 있어서 EEC가 會員國에 代替하므로 韓國은 同共同體와 섬유류協定을 締結하였다. 그러나 石炭 및 鐵鋼의 경우 52年 파리조약(ECSC)에 依하므로 韓國은 EC와 協定을 締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輸入量制限政策은 比較優位에 따라 國際分業의 促進을 취지로 하는 GATT 精神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그 遂行 메카니즘에 있어서도 協定の 締結에 依하여 合法化, 長期化 한다는 點에서 例外的 그리고 一時的으로 輸入量制限을 許容하는 GATT規定에도 위배되고 있다. ⁽⁸⁾

81年 8月 現在 18個 先進國이 一方的인 制限措置를 포함하여 韓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하여 加하고 있는 規制對象品目數는 148個에 達하며 이들의 輸出이 韓國의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거의 30%에 이르고 있다. 多者協定은 現在 섬유류에 局限되며 또 兩者協定の 對象品目 역시 一部 品目に 지나지 않고 있으나 最近의 不況이 지속되는 限, 그리고 GATT內에서의 討議 및 先進國 經濟頂上會談에서의 論議 등으로 미루어 이러한 形態의 協定은 擴散될 可能性마저 없지 않다.

3. 多者協定

韓國이 參加한 多者貿易協定은 아직까지 GATT와 關聯하여 섬유류 協定과 케네디 및 東京協商의 結果인 多者協定에 制限되고 있다.

韓國은 GATT에 加入하기 以前인 64年 綿織物 貿易에 관한 長期協定에 調印하였으며 그 後 74年 섬유류 多者協定(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 一名 MFA)으로 代替될 當時 輸出國으로서 이에 參與하였다.

同協定은 輸出入當事國들이 준수해야 할 品目別 增加率의 限界를 비롯한 범위를 定하고 있는데 韓國은 이에 依據하여 輸入國들과 個別協定을 締結 延長하여 오고 있다.

다음 韓國은 67年 3月 GATT에 加入하였는데 交涉過程에서 當時 進行中에 있었던 케네디協商에도 參與하여야 하므로 2重오퍼(combined offer)를 作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根據로 GATT 加入과 거의 同時에 케네디協商의 結果 採擇된 貿易協定에 調印하였다.

同協定은 關稅引下, 소맥의 國際價格 및 食糧援助, 化學製品에 관한 非關稅障壁 등의 의정서로 구성되었으나 韓國의 輸出과 直接 關聯되는 것은 關稅引下協定이었다. 同年 GATT 내에서 合意에 이룬 國際反덤핑稅法에도 參與하였으나 實質적으로 輸出의 安定的 增加에 期할 수 있는 內容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73年の 東京宣言, 그리고 그 後 美國의 貿易改革法(Trade Reform Act of 1974) 制定과 함께 本格的으로 始作된 GATT 내 第7次 世界貿易協商인 東京協商에도 韓國은 적극 參加하였다.

(8) GATT 第X條.

同協商은 79年 4月 終了되었는데 이와 함께 採擇된 協定은 다음과 같다.

- ① 關稅引下(tariff reduction)
- ② 關稅評價(customs valuation)
- ③ 補助金 및 相殺稅(subsidy & countervailing duty)
- ④ 反덤핑稅(anti-dumping code)
- ⑤ 政府調達(government procurement)
- ⑥ 輸入節次(import licensing)
- ⑦ 技術障壁(標準化 等)(technical barrier-standardization, etc.)
- ⑧ 熱帶產品(tropical products)
- ⑨ 農產品(agricultural products)
- ⑩ 民間航空機(civil aircraft)
- ⑪ 貿易規範(framework)
- ⑫ 緊急輸入制限(safeguard)

以上 12個의 協定이 採擇되었으나 韓國은 輸出上의 利得 및 實際 關聯如否를 고려하여 80年 6月~81年 1月間 ①, ②, ③ 및 ⑦에 해당하는 協定에만 調印하였으며 81年中 ⑤에 관한 協定에 參與할 것으로 傳해 진다.

그러나 3萬餘個의 品目에 대한 關稅率을 引下하여 世界貿易의 400억 달러에 達하는 讓許額을 實現한 케네디 協定の 경우(67年 기준, 名目關稅 平均引下率 35%)도 그러했거니와 東京協定の 結果 역시 韓國과 같은 中進國의 輸出에 과연 利益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東京協商 結果 특히 關稅引下部門에서 가장 큰 成果를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10個 先進諸國을 中心으로 한다면 76年 基準 名目關稅 平均讓許率은 國家에 따라 20%~40%에 位置하며 加重平均讓許率은 品目에 따라 30%~52%에 이른다. 또 對後進國 輸入加重值을 基準으로 하더라도 原料 및 半製品의 경우 讓許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一次產品生産·輸出國에 相對的으로 有利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⁹⁾

韓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로 因하여 凡世界的인 多者貿易協商의 進行에 큰 期待를 걸 수 없을 것 같다.

첫째는 協商權(negotiating power)의 問題로서 主輸出國의 原則 때문에 韓國의 輸出과 關聯된 品目에 대한 要請이 잘 수락되지 않는 反面 先進諸國은 그들의 利益을 關切하기 위하

(9) 同協定은 例로 韓國國際經濟研究院, 『新國際貿易規範—MTN과 그 對策』, 1979. 12 參照.

여 壓力을 加할 수 있다. 섬유류 및 電子製品과 같은 勞動集約的 部門에 있어서 大部分 아직도 高率의 關稅構造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 UNCTAD 테두리 내에서의 一般特惠制度(GSP) 實施와 無差別原則에 입각한 多者 關稅引下作業間 後進國의 工產品輸出에 대한 效果는 각 경우에 따라 別途의 分析이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展望할 수 있는 것은 韓國의 主要 工產品輸出이 先進國에 依한 一般特惠制度의 實施過程에서 많은 例外規定의 適用對象이 되고 있으므로 關稅引下 그 自體가 별 效果를 주지 못하는 물론 다른 後進國에 比하여 오히려 相對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處할 수도 있다는 點이다. 또 韓國의 輸出이 先進國의 關稅率에는 非彈力的이며 오히려 非關稅障壁에 따르는 制約에 더 큰 影響을 받고 있다는 事實도 간과할 수는 없다.

III. 特惠關係와 國際貿易秩序

이렇게 볼 때 韓國이 이제까지 締結하여 온 對外貿易協定은 아직까지 無差別原則(non-discrimination principle)의 準수를 前提로 하고 있으며 一般的인 協力の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貿易의 增大를 通하여 去來當事國間 實質的인 利得을 가져 올 수 있는 特惠關係 以上の 經濟統合을 推進하는 경우는 除外되고 있다.

事實 韓國이 一定國과 特惠地域의 設定을 試圖하는 경우 政治的인 側面 以外 國際貿易秩序와 兩立可能性 및 經濟的 利得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本節에서는 우선 前者를 살피기로 한다.

戰後 國際貿易秩序를 觀望하여 온 것은 IMF-GATT體制라 할 수 있으며 특히 實物移動과 關聯하여 GATT規定(第XXIV條)은 最惠國待遇(MFN)를 근거로 會員國間 貿易特惠의 供與를 禁하고 있다.

단지 GATT 第XXIV條는 同機構設立 以前の 既存 特惠를 例外的으로 許容하고 있으며⁽¹⁰⁾ 그 以外 自由貿易地域이나 關稅同盟과 같은 100%의 特惠地域設定에 限하여 所謂 포기條項(waiver clause)을 認定하고 있다. 즉 一定國間 特惠의 供與는 最小限 域內 貿易의 實質部分(substantial part)에 대한 장벽의 철폐를 目的으로 하는 自由貿易地域 以上の 統合에 限하여 可能하며 이 역시 日程表에 따라 適當한 期間(reasonable length of time) 내에 實現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經濟統合의 推進을 口實로 特惠地域의 設定이 擴大됨으로써 差別待遇가 擴散되는 現象을 防止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10) 例로 1932年の 英聯邦諸國間 特惠 또는 베네룩스(Benelux) 關稅同盟 등.

나아가 關稅同盟이나 自由貿易地域을 創設하더라도 「會員國間 貿易의 增大, 그리고 世界 貿易의 擴大를 그 취지로 하여야 하며 非會員國과의 貿易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바이너-미드-립시(Viner-Meade-Lipsey)流의 靜態效果에 입각하여 經濟統合의 推進은 貿易創出(trade creation)을 目的으로 해야 하며 貿易轉換(trade diversion)을 招來해서는 안된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會員國의 產業構造, 生産費差異, 貿易構造 및 對外共同關稅率 等 許多한 要因에 따라 決定되겠으나 한 例로 會員國生産이 극히 競爭的이 아닌 以上 貿易創出과 더불어 貿易轉換의 效果 發生도 불가피하게 보여지며, 따라서 前後者間 比較가 問題되겠다.⁽¹¹⁾ 또 貿易創出效果가 더 컸다 하더라도 事後的인 國別 輸入構造 여하에 따라 世界貿易에 대한 피해 與否가 決定되는 고로 事實上 法的 條文으로 經濟的 效果를 規制한다는 自體가 無理가 아닐 수 없다.

여하간 57年을 前後로, EEC의 創設 當時 國際的으로 學者 및 實務者들 사이 同問題가 광범위하게 論議된 바 있으나⁽¹²⁾ 特惠待遇와 經濟統合間 區別할 수 있는 基準은 극히 애매하며 이를 例外로 許容한 自體가 問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各會員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經濟는 물론 地理的, 歷史的, 文化的, 政治的 諸側面에서 相異한 與件에 있는 國家들에게 無差別原則이 强要된다는 것 또한 矛盾이 아닐 수 없다.

多少의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EEC가 經濟統合機構로서의 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以外 一定國間 推進되고 있는 貿易自由化는 事實上 特惠地域에 不過하다고 생각된다.

한 例로 先進諸國間 自由貿易地域의 代表的인 例라고 할 수 있는 EEC-EFTA 간 自由貿易地域의 設定을 보더라도⁽¹³⁾ 農産物部門이 그 對象에서 除外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및 아이슬랜드는 別途의 關稅引下計劃表를 따르고 있으며 關心品目(sensitive items)에는 例外規定이 許容되고 있다.

60年代에 들어서서 EEC의 탄생에 자극을 받아 經濟블럭化 現象이 深化됨으로써 國際經

(11) 貿易創出을 가져 올 수 있는 經濟的 與件에 關하여는 이미 바이너에 의해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The Customs Union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ew York, 1950, pp. 51-52.

(12) 例로 G. Patterson, "The Most-favored Nation Clause and Economic Integration," *Ann. Eur.*, Vol. XIII, 1965, p. 145 ff.; J.J. Allen, *The European Common Market and the GATT*, University Press of Washington, 1960, p. 71 ff.; F. Marie, "Le Marché Commun et le GATT," *RMC*, No. 18 (Oct. 1959).

其他 *General Report of the EEC*, 1957~60 參照.

(13) 英國의 EC加入과 함께 72年 EEC와 殘與 EFTA諸國間 5年을 期限으로 하는 自由貿易地域 設立을 위한 協定이 締結되었다.

濟에 있어서 하나의 特徵을 이루어 왔는데 域外의 觀點에서는 한마디로 特惠의 擴大로 要約된다.

EEC-ACP 간 로메(Lomé)協定은 물론 後進諸國間 經濟統合을 推進하는 아프리카 내 CEAO, EAC 및 UDEAC, 中南美 地域 내 LAFTA⁽¹⁴⁾, CACM 및 CARIFTA 또는 東南亞 地域內 ASEAN 등 許多한 例를 들 수 있는데 世界 거의 2/3 以上에 達하는 數의 國家가 直·間接적으로 特惠地域과 關聯을 맺고 있다.

先進國의 경우와는 달리 後進地域間의 特惠設定은 아직까지 國際貿易의 自由化와 關聯하여 커다란 論議를 야기하지 않았는데 몇가지 特殊한 與件이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

우선 IMF-GATT體制를 中心으로 한 國際經濟秩序가 先進諸國의 立場만을 反映하며 또 이들의 利益을 中心으로 운영되고 있어 後進諸國의 經濟의 劣勢나 不均衡이 全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GATT에서도 이 點이 감안되어 第3委員會가 別途로 設置되어 輸出所得의 增大가 검토되어 오고 있으며 64年 新設 4章의 삽입을 通하여 互惠性(reciprocity)原則이 後進國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크게 緩和되고 있다.

또 UNCTAD의 設立 以後 프레비쉬報告書의 提案에 따라 71年 以後 一般特惠制度가 實施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GATT原則에 대한 一大 改革이라 할 수 있다.

다음 後進地域이 國際貿易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對先進國 貿易依存度가 높아 後進國間 特惠의 實施로 因한 이 地域內의 需要變動이 國際水準에서의 生産·消費에 가져 올 수 있는 效果란 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大部分의 後進國이 高率의 關稅를 비롯하여 保護主義的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는 點에서 貿易轉換의 效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나 非彈力的인 對先進國 輸入構造나 높은 輸入需要의 所得彈力性으로 미루어 一般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後進地域內 特惠의 實施는 世界貿易이 가져 올 수 있는 效果보다는 좀 더 그들 간 開發에 대한 利益과 關聯시키려는 것이 많은 學者들의 見解이다.⁽¹⁵⁾

現在 先進諸國의 立場은 後進國間 地域別 小集團化의 傾向에 好意를 보이고 있으며 UNCTAD를 비롯한 各種 國際會議에서도 先進國內 後進國輸出市場의 擴大와 더불어 이 地域間 經濟統合의 推進을 支援하는 內容의 決議를 採擇한 것도 前述한 理由 때문이 아닌가 한다.⁽¹⁶⁾

(14) LAFTA는 80年 期限의 滿了와 함께 81년부터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로 改稱되었다. 同條約의 內容에 關하여는 *Comercio Exterio de Mexico*, Vol. 26 No. 8 (Aug. 1980), pp. 278-280 參照.

(15) 大部分의 後進國 經濟統合論者들이 이러한 見解를 闡發하고 있다.

(16) 한 例로 1975年 9月 16日 2,349次 UN總會의 決議案에서도 後進國間 貿易을 비롯한 經濟障壁의

IV. 特惠關係를 통한 利得

大部分의 統合論者들은 特惠의 提供에 따르는 效果를 一般關稅同盟理論(或은 現代式的 表現으로는 經濟統合理論)과 混同하여 分析하여 왔다. 例로 립시流의 次善理論(second best theory)에 따르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部分的인 特惠의 점진적인 擴大가 特定國間 100%의 特惠를 內容으로 하는 自由貿易地域의 設定보다 더 큰 경제적 利益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域內貿易의 自由化 보다는 特惠의 提供에서 經濟統合의 意義를 찾으려는 試圖가 쿠퍼-마셀(Cooper-Massel)의 論文이나 존슨(Johnson)의 主張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後進國의 經濟的 特殊性을 고려하여 開途國 經濟統合理論으로 連結시켜 지고 있다.⁽¹⁸⁾

總體的으로 볼 때 傳統的인 統合理論은 後進諸國의 工業化에 대한 選好에 비추어 適切하지 못하다. 즉 經濟的 效率性을 中心으로 하는 貿易創出 및 貿易轉換效果는 一部國民所得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輸入代替를 통한 外貨節約이나 工業化의 促進에 政策目標의 우선을 두고 있는 大部分의 後進諸國에게 說得力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後進國 經濟統合理論은 本質적으로 域內市場의 擴大를 통한 動態的 效果에 보다 그 重點이 두어지고 있다고 본다.

요는 對象國들 간 特惠의 擴大나 統合을 推進할 경우 얻는 利得(工業化 및 外換節約 등)과 損失(域內 높은 輸入費用으로 인한 國民所得上 損失 또는 資源費用 등) 간 費用-便益(cost-benefit) 分析을 통하여 이에 따르는 效果를 測定해야 할 것이다.⁽¹⁹⁾

또 先進諸國의 경우와는 달리 後進國에 있어서는 競爭力의 差異, 産業構造의 異質性 및 工業化計劃上的 重複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統合의 推進에 따르는 利益을 公平히 配分할 수 있는 別途의 計劃이 前提되지 않을 수 없다.⁽²⁰⁾

이렇게 볼 때 傳統的인 마이너流의 結論과는 달리 後進國間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一般的

除去 必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Resolution o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3362 (S-VII)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17) R. Lipsey,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Weidenfeld and Nicolson, 1970, p. 121 ff.

(18) 前掲 論文.

(19) F. Andic, S. Andic, and D. Dosser, *A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G. Allen and Unwin, 1971에서도 이러한 理論的 試圖가 行해지고 있다.

(20) 一部 論文은 後進國間 經濟統合에 따르는 利益의 配分에 관한 一般原則을 定義하고 있다. 例로 D.C. Mead, "The Distribution of Gains in Customs Unions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Kyklos*, Vol. 21 (1968), pp. 713-34.

으로 工業化에 대한 意慾이 強할수록, 또 產業構造의 補完성이 클수록 이를 通하여 얻는 利益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實際로 工業化에 대한 選好와 같은 基準은 相對的 主觀的이므로 國家間 이를 對比 測定하기는 困難하며 따라서 統合으로부터 얻는 經濟的 利得을 會員國間 相互 公平히 配分한다는 데에는 無理가 있다. 이는 當事國間 政策的 合意에 依하여 遂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²¹⁾

이러한 意味에서, 그리고 後進國內 市場이 극히 歪曲되어 있고 國家間 經濟, 產業構造 側面에서의 격차가 甚하다는 點에서 自由貿易의 設定과 같은 完全한 經濟統合의 推進보다는 相互 利益을 保障할 수 있다는 前提下에 特惠의 단계별 擴大가 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²²⁾

경제적인 側面에서 特惠協定은 關稅同盟과 같은 統合機構에 比하여 特化의 深化나, 實質 所得의 再分配效果가 적으며 특히 規模의 經濟, 外部經濟, 競爭力의 強化 및 投資擴大 등 動態的 利得이 위축될런지도 모른다. ⁽²³⁾ 그러나 先進國經濟에 適用되는 이러한 一般의인 效果는 個別後進國間 統合의 경우에도 그대로 期待할 수는 없다고 보며 또 이에 따르는 副作用 ⁽²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部門別 特惠의 提供이 一國經濟에 줄 수 있는 충격 을 보다 작게하는 公式이 될 수 있다.

V. 結 論

以上 韓國이 그 간 締結하여 온 貿易協定을 內容別로 概觀하였거니와 이를 通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보다 폭넓은 資本, 技術 및 經濟部門別 協力에 依하여 補完될 수는 있으나 貿易에 局限한다면 극히 一般的인 無差別原則을 內容으로 하는 協定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러

(21) ASEAN이나 LAIA의 경우 產業立地에 따른 共同事業의 推進, 共同基金의 運營, 產業補完協定 및 特殊資源에 관한 긴급응통제도(Emergency Sharing Scheme)의 設置 등을 通하여 相互 利益의 調整을 期하고 있다.

(22) 아프리카 및 中南美諸國에 설정된 經濟統合機構中 아직까지 當初의 目的을 達成한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一種의 特惠地域에 不遇하다. ASEAN과 같이 단순한 協力を 표방하나 會員國의 經濟的 與件이 許容하는 범위 내에서 相互 日程表에 따라 特惠를 擴大하고 있는 경우가 더 現實的이라 할 수 있다.

(23) 兩形態間 效果比較에 관하여는 A. Tovias, *Théorie et pratique des accords commerciaux préférentiels*, Herbert Lang, Berne, 1974, pp. 112 ff.에 詳細히 分析되고 있음.

(24) 例로 動態的인 側面에서 内部 및 外部非經濟效果에 따르는 市場規模의 위축이나 좁은 產業部門에서의 過度한 特化로 인한 不均衡 등.

한 貿易協定은 非GATT會員國과의 경우에는 意義가 있을지 모르나 GATT會員國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何等의 實質的인 影響을 주지 못한다.

둘째 一部 多者協定(섬유류協定)은 물론 部門別 兩者協定은 모두 關心品目(sensitive items)에 관한 韓國側의 輸出國 自律規制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 韓國의 輸出發展에 가장 큰 障礙요인의 하나로 登場하고 있는 先進諸國에 依한 輸入制限政策은 國際的인 次元에서 産業再調整政策이 遂行되지 않는 限, 그리고 現在 世界景氣의 침체가 延長된다는 前提下에서 悲觀的인 展望을 주고 있다.

이러한 新保護主義에 對處할 수 있는 方法은 이의 緩和를 위한 經濟外交의 展開도 重要하나 이와 함께 國內的으로는 輸出産業構造의 多樣化 및 高度化도 併行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本稿에서는 市場의 多邊化 및 貿易을 통한 實質的인 利得의 擴大를 위하여 特惠協定の 締結을 提案하였다.

우선 GATT體制에 依한 國際貿易秩序나 美國과 같은 一部 先進國의 立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韓國이 이를 推進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外部的 制約이 없음을 살폈다.

다음 具體的으로 對象國이 選定되었을 경우 別途의 效果分析이 따라야 하겠으나 어떤 意味에서는 特惠協定の 推進이 關稅同盟이나 共同市場과 같은 形態의 統合보다 工業化計劃의 遂行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經濟的 主權의 制約이라는 側面에서도 보다 現實的이며 積極적이라는 點도 간과할 수 없다.

對象國에 있어서 先進諸國은 除外되며 特惠의 提供을 통한 效果를 고려한다면 韓國經濟와는 補完關係에 있는 一部 資源保有 後進經濟가 더 適合할 것 같다.

EEC의 경우 韓國의 重要輸出部門에 대하여 輸入制限政策을 實施하고 있으며 特惠關係는 아직까지 會員國의 舊植民地를 비롯한 ACP諸國 및 地中海沿岸國에 局限되고 있다. 또 美國은 傳統的으로 無差別原則에 입각한 國際主義를 固守하고 있으며 最近 民間次元에서 論議되고 있는 아시아·太平洋地域內 經濟統合의 推進에 거의 無關心하며 日本 역시 公式的으로는 美國과 비슷한 立場을 取하고 있다. 韓·日間 貿易不均衡의 深化가 韓國經濟에 있어서 解決해야 할 커다란 課題로 登場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貿易特惠協定の 締結을 論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結局 그 效果는 물론 現實的인 可能性을 감안할 때 韓國이 特惠協定을 추진할 一次的인 對象은 ASEAN을 비롯한 東南亞 資源保有國이라고 생각되며 成功 如何에 따라 점차적으로 아프리카 및 中南美諸國으로 擴大하는 方案이 理想的인 아닐까 한다.